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

오픈이노베이션 모집 공고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부산대학교병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 오픈이노베이션
- ☐ **사업목적:**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관내 대학 병원 간 연계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을 발굴
-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 **모집기간:** 2026. 8. 24.(월) ~ 2026. 9. 11.(금), 18:00까지
- ☐ **지원규모:** 10개사, 기업당 최대 1,100만 원(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 사업비는 기업에서 선집행 후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함
 - ※ 부가가치세 및 은행 송금 수수료는 지원 대상 비용에서 제외됨
- ☐ **지원대상:** 의료·헬스케어 전후방 연관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부산시 서구 내 본사, 지사, 공장, 부설연구소 등 이전 예정 기업 우대)
 - ※ 전후방 연관 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진단·검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데이터, 관련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등
- ☐ **우대사항:** 아래 항목 중 1개에 한하여 가점 5점 부여

〈우대가점 신청 유형 및 대상〉				
연번	구분	업력 4년 미만	업력 4년 이상 ~ 10년 이내	제출 서식
1	서구 인큐베이터 공간 입주 희망 기업	신청 가능	신청 불가	서식3 「인큐베이터 공간 입주 의향서」
2	서구 이전 예정 기업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서식4 「서구 이전 협약서」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공고일(2026. 8. 24.)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함.

- ☐ **주요내용**
 - 관내(부산시 서구) 대학병원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회 제공
 - 연구 과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검증 및 고도화 비용 지원

2

모집개요

□ 모집분야

과제 수요(예시)

○ 세부 분야

연번	계열	주요 분야
1	AI · SW	AI 기반 만성질환 예측 및 조기진단 시스템 (당뇨병, 만성콩팥병 등 발생 예측)
2		건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국가검진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등)
3	바이오마커 · 유전자	유전자 치료제 및 치료 플랫폼 (BBB 통과 가능한 유전자치료 플랫폼 등)
4	모니터링 기기	근골격계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근감소증, 척추측만증 등 진단 및 모니터링)
5	치료 · 처치 기기	외과 수술용 자동화 시스템 (복강경 수술용 병변 마킹 시스템, 수술 가이드 시스템 등)
6	디지털 치료제 · 서비스	수면장애 진단 및 디지털 치료제 (수면 무호흡증 스크리닝,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등)

※ 세부 분야 중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함.

※ 세부 분야는 병원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로, 실제 협력 방식 · 범위 · 형태 · 일정은 선정 이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함.

□ 지원내용: 과제 수요에 대응 가능한 기술 검증 및 고도화 비용 지원

□ 지원금: 기업당 최대 1,100만 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선정 기업 수가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 지원금 배정 구간 및 기업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지원금	선정기업 수
1	1,100만 원	2개사
2	1,000만 원	4개사
3	900만 원	4개사

□ 사업비 집행 비목

구분	비목	세목(사용용도)
직접비	연구재료비	- 시약 · 재료 구입비 - 시작품 · 시제품 및 시험설비 제작 경비
	연구활동비	- 시험 · 분석 · 검사비 - 인증시험 수수료 - 임상시험 및 사용성 평가비 - 데이터 수집 · 가공 · 분석 비용 - 기타 기술 검증 및 고도화(PoC)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7. 유의사항」의 사업비 집행 비목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인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방법

- ☐ **접수기간:** 2026. 8. 24.(월) ~ 2026. 9. 11.(금), 18:00까지
- ☐ **접수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guswl970203@gmail.com) 접수
- ※ 마감 시각까지 담당자 메일함에 도달한 건에 한하여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구분	번호	구비서류	부수	비고
필수 제출	1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2
	3	- 사업자등록증	1부	
	4	- 중소기업확인서	1부	
	5	- 최근 3년 재무제표(2023~2025) 제출 ※ 2025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출 가능한 최근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미제출 연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갈음	1부	
	6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해당시 제출	7	- 인큐베이터 공간 입주 의향서 ※ 업력 4년 미만 기업에 한함	1부	서식3
	8	- 서구 이전 협약서	1부	서식4
	9	-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등	각 1부	

※ 모든 파일명은 ex) 1.[기업명] 사업신청서, 2.[기업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같이 번호와 서류명을 통일하고, 각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사업단	051-240-6860	guswl970203@gmail.com

※ 전화 문의 가능 시간 : 08:30~17:30

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 5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에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총점(105점 만점)을 산출하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 최고점·최저점이 동일한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동점 시 ①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②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함.
- 지원의 필요성, 기업(제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차등 배정
- 선정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기업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	20점
기업(제품) 역량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사업수행 능력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신청 과제 분야와의 부합성 -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 향후 계획의 적정성	40점
기대효과	- 예상 성과(기술 고도화, 시제품, 특허 등) - 파급 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20점
우대가점 (두 서식을 모두 제출해도, 가점은 1개만 인정됨)	- 인큐베이터 공간 입주 의향서 제출 기업 (업력 4년 미만 기업에 한함) - 서구 이전 약속서 제출 기업	5점
합 계		105점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은 평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과제 수행	최종 검토 및 정산
8. 24(월) ~ 9. 11(금)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선정평가 및 현장 점검 - 협약(최종선정기업)	- 신청 과제 분야 관련 자체 기술 검증 및 고도화 수행 -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청구서 제출	- 실적 증빙 검토 - 지원금 정산
8~9월	9월 중	협약 체결일 ~ 11월	11월 ~ 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적 증빙 검토 및 지원금 정산 등 사후 행정절차는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수 있음

6

제외 대상

-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동일 과제로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 관련 제품·서비스의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수요처 과제 분야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정해진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선정 후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이후에 지원 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동안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서식3] 서구 인큐베이터 공간 입주 의향서 또는 [서식4] 서구 이전 협약서를 제출하여 우대가점을 받은 기업이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의향서 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운영기관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해석 및 안내에 따름
- 본 사업의 “협력 기회”는 수요처 의료진과의 기술 자문, 의견 교환, 수요 검증 등의 기회 제공을 의미하며, 공동연구 계약 체결, 임상시험 실시, 의료데이터 제공, 특정 교수·진료과와의 매칭을 보장하지 않음. 해당 사항이 필요한 경우 병원의 별도 심의·계약 절차(IRB, 데이터심의위원회 등)를 따름.
- 수요처의 진료·연구 일정, 인사 변동, 내부 심의 결과 등 운영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협력 기회 범위가 변경·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 승인 하에 과제 목표 및 사업비 집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협력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기업의 과제 수행 및 정산 의무는 유지됨

□ 사업비 집행 비목

-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이외의 인건비, 사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은 계상할 수 없음.
- 컴퓨터, 컴퓨터 부품,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등 자산취득성 장비 구입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재료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대부분을 단순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등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 운영기관의 검토를 거쳐 조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음.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작품·시제품의 단순 구매 비용 또는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외주 제작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술 검증 및 고도화(PoC)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